

광주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가합586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익

변 론 종 결 2022. 4. 1.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주식회사 C 사이에 2020. 10.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과 주식회사 C 사이에 2020. 10.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29.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7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0,000,000원으로
각 경정하고,
나.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7,016,30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7,016,305원으로 각 경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가 되는 사실

가. 원고의 대여

1) 원고는 2016. 11. 16.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150,000,000원을, 이자 연 3.18%(변동금리), 지연손해금 연 12%, 변제기는 3년 동안 매월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7. 11. 27. 이 사건 회사에 50,000,000원을, 이자 연 2.46%(변동금리), 지연손해금 연 12%, 변제기는 3년 동안 매월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8. 4. 10. 이 사건 회사에 120,000,000원을, 이자 연 2.55%(변동금리), 지연손해금 연 12%, 변제기는 3년 동안 매월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19. 3. 13. 이 사건 회사에 80,000,000원을, 이자 연 2.65%(변동금리), 지연손해금 연 6%, 변제기는 3년 동안 매월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각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 A은 2020. 10.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20.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이하 각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대여 원리금 미상환 등

1)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제3 대여금에 대하여 2020. 11. 19.까지, 이 사건 제2 대여금에 대하여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제4 대여금에 대하여 2020. 12. 14.까지, 이 사건 제1 대여금에 대하여 2020. 12. 21.까지의 각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2) 원고는 2021. 5. 26.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를 하였다.

3)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원리금 잔액은 2020. 10. 29. 기준 364,770,222원, 2021. 7. 7. 기준 373,151,460원이다.

라. 경매절차의 진행 및 원고의 배당이의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0.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D)이 내려졌다.

2) 원고는 2021.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66,131,653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21. 3. 31.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그 무렵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원고는 2021. 7. 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2021. 7. 29. 열린 배당기일에 각 피고 부분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채권자		피고 A	피고 B
채권금액	원금	70,000,000원	160,000,000원
	이자	0원	0원
	비용	0원	0원
	계	70,000,000원	160,000,000원
배당순위		6	7
이유		근저당권자(2020-201511)	근저당권자(2020-202522)
채권최고액		70,000,000원	160,000,000원
배당액		70,000,000원	157,016,305원
배당비율		100%	98.14%

5) 원고는 배당기일에 각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한 뒤, 2021. 7. 30.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이 사건 회사가 각 피고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 사건 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만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회사가 각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법리에 따르면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70,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70,000,00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7,016,305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57,016,30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각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배척)

가. 각 피고들의 항변 요지

각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각 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각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E의 배우자와의 친분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지도 않았다.

(2)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E과 동종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지도 않았다. 또한, 위 피고가 주장하는 기계 판매대금 3,000만 원은 변제기가 2018. 12. 30.로 되어 있는데, 위 피고는 그로부터 2년 동안 이에 관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각 피고와 이 사건 회사 대표 사이의 위와 같은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보면, 각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산 상태나 영업 상황을 알고 있었을 여지가 크다.

(4) 위와 같이 거래 방법이 이례적인 점 및 피고 B의 경우 그가 주장하는 채권액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각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나) 따라서 각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판사 김수양, 판사 박건훈

별지

부동산 목록

1. 광주광역시 북구 F 공장용지 778.4㎡

2. 광주광역시 북구 F

[도로명주소] 광주 북구 G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2층 공장 및 창고

1층 공장 480㎡

1층 창고 63㎡

2층 창고 90.2㎡, 끝.

